

불임1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및 전문

[신구대조표]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심의서

1. 규정 개정 취지

- 외국어시험 과목 변경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자격성적 제출시 유효기간 구체화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외국어시험 과목 변경

개정전	개정후
제30조(외국어시험)	제30조(외국어시험) ②항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및 <u>불교 고전어</u>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자격성적 제출시 유효기간 명시

개정전	개정후
제30조(외국어시험)	제30조(외국어시험) ④항 외국인학생 한국어능력자격(TOPIK) 성적표 <u>최근 2년</u> 이내로 유효기간 명시 및 학과 소속 교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u>한국어 논술시험 혹은 응시자의 모국어와 동일하지 않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내용</u> 개정

3.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제30조(외국어시험) ①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p> <p>③ 외국어시험은 전공과 관련된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기고사를 부과하지 않고,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0.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TOEFL(CBT) 213점, TOEFL(iBT) 79점, TOEIC 700점 또는 TEPS 60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FLEX점수를 읽기영역 300점(600점 만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취득한 경우. 3.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p>④ 석·박사과정 <u>외국인학생에게는 한국어능력자격(TOPIK) 5급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어시험을 논술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u>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는 응시자의 모국어와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p> <p>⑤ 시험문제 출제 기준 등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신설 2020.3.1.></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제30조(외국어시험) ① 좌동</p> <p>②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및 <u>불교 고전어</u>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24.00.00.></p> <p>③ 좌동</p> <p>④ 석·박사과정 외국인학생에게는 <u>최근 2년 이내의</u> 한국어능력자격(TOPIK) 5급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u>한다. 다만, 학과 소속 교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한국어 논술시험 혹은 응시자의 모국어와 동일하지 않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u><개정 2024.00.00.></p> <p>⑤ 좌동</p>

<중략>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중략>

좌동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

금강대학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 정	:	2009. 5. 1
개 정	:	2012. 1. 1
개 정	:	2012. 11. 1
개 정	:	2013. 1. 1
개 정	:	2014. 2. 1
개 정	:	2014. 5. 1
개 정	:	2015. 1. 19
개 정	:	2017. 4. 1
개 정	:	2017. 11. 15
개 정	:	2019. 4. 8
개 정	:	2020. 3. 1
개 정	:	2020. 6. 15
개 정	:	2020. 10. 22
개 정	:	2021. 2. 15
개 정	:	2022. 12. 27
개 정	:	2024. 10. 14
개 정	:	2024.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사업무의 수행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입학

제3조(전형시기) 입학전형은 매년 학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전형료와 함께 본 대학원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입학 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부
3. 하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개정 2020.3.1.>
4.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5. 사진(반면형판 3cm X 4cm) 2매(입학지원서 사진포함)<개정 2020.3.1.>
6.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박사학위과정 입학 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출신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3. 하위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개정 2020.3.1.>
4.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5. 연구실적 및 연구실적물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6. 사진(반명함판 3cm X 4cm) 2매(입학지원서 사진포함)<개정 2020.3.1.>
 7.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선발인원) 입학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전형방법 및 기준)**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심사(학업계획서, 하위과정 성적), 구술(면접)고사등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0.3.1.>
- ② 서류심사(학업계획서, 하위과정 성적)에서는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조의 입학지원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지원자격을 심사한다.<개정 2020.3.1.>
- ③ 구술(면접)고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업계획서에 따른 수학준비도,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개정 2020.3.1.>
- ④ 제1항의 서류심사(학업계획서, 하위과정 성적)와 구술(면접)고사 이외에 필기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0.3.1.>

제7조(입학전형위원)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 각 학과의 강의 담당교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하위과정 백분위 성적 평가(30%)] :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개정 2020.3.1.>
<개정 2022.12.27.>
2. 서류심사[학업계획서 평가(30%)] :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개정 2020.3.1.>
3. 구술(면접)고사 (40%) :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개정 2020.3.1.>
4. 필기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필기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학업계획서, 하위과정 성적), 구술(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입학전형위원 2인 이상의 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출하며 각 전형별 산출점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0.3.1.>

제9조(합격자 사정) ① 대학원장은 학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 등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재적인원 및 입학시험 성적을 참작하여 합격인원 을 조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9조2(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7.>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의 입학허가 취소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입학취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27.>

제3장 등록

제10조(등록의 종류) 등록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 : 수업년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 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입학등록 · 편입학등록 · 재입학등록 :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3. 연구생등록 : 대학원의 학위과정 중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개정 2020.3.1.>

4. 연구등록(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 대학원 수료 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신설 2020.3.1.>

5. 연구등록(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미응시자를 포함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아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응시 포함 논문지도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신설 2020.3.1.>, <개정 2020.6.15.>

제11조(입학등록) ①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③ 입학등록•편입학등록•재입학등록의 경우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허가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3.1.><개정 2020.10.22.>

제4장 교육과정 · 학점 · 선수과목 · 성적 및 수료

제12조(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3.1.>

제12조의 2(교육과정 개편 확정) 교육과정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 개편사유와 교육과정의 신구대조표등을 작성하여 전 학년도 9월말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0.3.1.><개정 2022.12.27.>

제13조(교과목 개설 및 변경) 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는 확정된 교과과정에 의해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안)을 작성하여 매학기 종강 15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교수회의나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3.1.>

제1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을 학과(전공)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이미 수강 처리된 과목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F학점 포함)은 성적기록표에 기록된다.

제15조(성적인정) 성적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총 수업일의 3/4이상, 성적평점은 2.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점평균은 3.0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학점취득)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시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7조(수업방법) ①수업은 각 과정 및 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박사과정간 통합 수업을 할 수 있다.

② 출석수업이 어려운 경우 학과(전공)교수회의 및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격수업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22.>

제18조(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제19조(필수과목) 필수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제20조(선수과목) 일반대학원에 비동일 계열의 전공출신자로서 입학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수과목을 본교의 학부과정에서 선수하여야 한다.

1.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2.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3.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논문지도교수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제21조(선수과목 학점) ① 선수과목 학점은 C0학점이상 취득시 합격(Pass)로 처리하며, 대학원 과정의 전공이수학점에는 가산되지 않으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 ② 비전공 출신자로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③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본교 학부의 6학점(2개 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국내·외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학기당 국내 대학원은 3학점, 국외 대학원은 9학점까지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3.1.>

- ②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위과정 연계)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재학시 취득한 최저수료학점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동일계열에 한하여 3학점 범위 내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때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이 대학과 공동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때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때는 9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대학원학점 선취득)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학점으로의 인정은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초과분에 한한다.

제25조(학과간 수업 연계) 대학원 내의 타 학과가 개설한 과목의 이수는 전공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통산 최대 9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 인정여부는 해당 학과(전공)교수회의에서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3.1.>

1. 석사과정: 12학점까지<개정 2020.3.1.>
2. 박사과정: 18학점까지<개정 2020.3.1.>

- ②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적당시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의무복무 입영에 따른 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을 경과한 자가 의무복무로 인해 군에 입영할 경우, 담당교수가 재량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및 복학

제28조(휴학과 복학)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8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학기중 의무복무로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감면환불하지 아니하며, 차기 복학학기에 감면한다.<개정 2020.3.1.>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

제29조(구분 및 신청) ①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3.1.>

②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제30조(외국어시험) ①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및 불교 고전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24.00.00.>

③ 외국어시험은 전공과 관련된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기고사를 부과하지 않고,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0.3.1.>

1.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TOEFL(CBT) 213점, TOEFL(iBT) 79점, TOEIC 700점 또는 TEPS 60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FLEX점수를 읽기영역 300점(600점 만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취득한 경우.

3.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④ 석·박사과정 외국인학생에게는 최근 2년 이내의 한국어능력자격(TOPIK) 5급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소속 교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한국어 논술시험 혹은 응시자의 모국어와 동일하지 않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00.00.>

⑤ 시험문제 출제 기준 등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신설 2020.3.1.>

제31조(전공종합시험) ① 전공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4학기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각 과정별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기준 및 시험과목예외인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3.1.>

과정	시험과목 수	합격기준
석사과정	전공 3과목 이상	각 과목 70점 이상
박사과정	전공 4과목 이상	각 과목 70점 이상

*시험과목 중 과목1, 과목2로 나뉘어져 있는 과목은 1 과목으로 인정한다.

제32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전까

지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개정 2020.3.1.>

② 전공종합시험에 일부 과목만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제33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학위과정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종강일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선정 기한 내에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퇴직한 명예교수는 임용 후 5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3.1.>, <개정 2020.6.15.> <개정 2020.10.22.>

②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의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④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새로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4조(논문지도비) 삭제 <개정 2022.12.27.>

제35조(논문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3.1.><개정 2024.10.14.>

1.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해당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3.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개정 2020.10.22.>
5.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자
6.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별표1 참조)에 100%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작 100%(별표1 참조)를 출판한 실적이 있는 자<개정 2020.3.1.>

< 연구논문 실적 인정비율 >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가) 논문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나) 기타 2인 공동연구	70%
다) 3인 이상 공동연구	50%
<개정 2020.10.22>	

7. 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신설 2020.10.22.>

8.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신설 2020.10.22.>

9. 연구윤리준수교육을 이수 받은 자<신설 2024.10.14.>

제36조(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소속교수 1인 이상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제36조의 2(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논문 초록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진행 일정, 참고문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도록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보완하여 각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1/2 이상 이수한 이후부터 논문 초록심사 이전 학기까지 제출하고, 논문지도교수와 소속학과교수 1인 이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2.15.>

제37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매년 4월 및 10월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 와 학과소속교수 1인 이상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제출서류를 논문심사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개정 2022.12.27.><개정 2024.10.14.>

1. 석사학위과정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 신청서 1부
- 나. 학위논문 연구 계획서 1부
- 다. 학위청구논문 3부
- 라.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마. 논문표절검사(문현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1부
- 마의2. 연구윤리준수교육 확인서 1부<신설 2024.10.14.>
- 바.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 신청서 1부
- 나. 학위논문 연구 계획서 1부
- 다. 학위청구논문 5부
- 라.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마. 논문표절검사(문현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1부
- 바.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및 게재 논문 1부
- 마의2. 연구윤리준수교육 확인서 1부<신설 2024.10.14.>
- 사. 기타 필요한 서류

제38조(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3.1.>

1. 석사학위과정 :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수료일로부터 10년 이내

3. 군 의무복무 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0.3.1.>

4.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과 학과교수회이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3.1.>

제39조(논문 초록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의 초록을 발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단, 논문 초록 심사통과 인정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3.1.><개정 2020.10.22.>

②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초록발표 심사위원은 불교학과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평가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심사평가 결과서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

제40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과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도 국문과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석사논문의 경우 3인으로, 박사논문의 경우 5인(내부교원은 3인 이내, 외부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구성되며, 대학원장이 논문 제출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2.12.27.>

②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제42조(논문심사의 구분) 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은 1회로 행하며, 논문 내용의 독창성, 체제의 완비, 논지의 일관성, 배경지식과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본 심사 회부를 결정한다.

③ 학위논문 본 심사는 예비심사 종료 1주일 이후에 석사학위논문은 1회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2회 이상(본심 1회, 종심 1회)을 실시하며, 본심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하며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실시하며, 종심은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학위논문심사를 최종 결정한다.

제43조(논문심사의 방법) ①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본, 표본, 기타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논문의 수정) 논문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제출논문은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45조(논문심사기간)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심사기간은 심사위원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는 예비심사 기간 전 심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45조(논문심사기간 연장) ① 논문심사 평가와 판정에서 “판정유보”로 판정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진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그 심사기간을 심사직후 한 학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0.22.>

②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자의 다음학기 논문심사대상자 심사신청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심사위원 변경시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22.>

③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과정은 판정유보 또는 심사 진행 불가 사유로 승인을 받은 단계부터 진행한다. <신설 2020.10.22.>

제46조(논문심사 평가와 판정) ① 논문의 심사 평가는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45조의 2에 따라 논문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정유보”로 판정한다. <개정 2020.10.22.>

② 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우” 이상,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이 “우”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제47조(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새로 작성하여 다음 학기에 제출한다. <개정 2020.10.22.>

제48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어, 독어, 일어, 중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제49조(통과논문의 제출) ①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학위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제작하여 대학원에 하드표지 종이제본 2부, 도서관에 하드표지 종이제본 4부 및 전자식자본(USB) 1부를 학위 논문 이용허락 동의서(소정양식) 1부 등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개정 2022.12.27.>

② 대학원에 제출하는 논문은 규정된 심사위원 중 “우” 이상으로 평가한 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0.22.> <개정 2022.12.27.>

제8장 학위수여

제50조(학위수여) ① 대학원 과정별 수료학점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는 2월과 8월에 한다.

제51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2조(명예박사학위)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하되 학칙 제38조의 별표2에 따른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총장이 행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장학금 · 포상 · 징계

제53조(장학금) ① 대학원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 지급한다.

제54조(포상)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1. 학업 및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선행에 있어서 표창할 만한 자.

제55조(징계) 대학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의견서와 함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학업성적이 극히 열등하여 각 과정의 이수가 불가능한 자.
3.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면학 질서를 심히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4. 원내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대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한 자.

제5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직으로 구분한다.

제10장 외국인 학생

제57조(입학전형) ①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58조(지원자격) ① 외국인으로서 학위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단, 3급 소지자는 재학 중에 4급 이상 취득, 제출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제59조(지원서류) 외국인 학생이 정원 외 석·박사 과정의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 1부.<개정 2020.3.1.>
2.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각1부. (한글,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한글 번역 공증)<개정 2022.12.27.>)
3.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영문 또는 한글) 각 1부.<개정 2020.3.1.>
4. 학교장 또는 지도교수추천서 1부.
5. 재정보증인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 예치잔액 US \$18,000 상당)<개정 2022.12.27.>
6. 여권 사본 1부.
7. 한국어능력(TOPIK) 취득 성적표 1부.
8. 기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제60조(외국인등록) ① 각 대학원에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국내 체류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1조(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학과 주임교수 및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2조(학칙적용)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 3항, 4항에 대하여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칙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제21조(논문제출자격)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 중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18 학점(6개 과목) 중 본인에게 부여된 선수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②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 중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본교 학부의 6학점(2개 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개정 세칙 제7조(입학전형위원회), 제13조(교과목 개설 및 변경)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가. 제26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나.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 ① 제38조(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10조(등록의 종류)5항, 제38조(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4항을 적용한다.
 - 다.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가. 제38조(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은 2019년 4월 8일자 학칙 개정 이후 입학생, 학칙 개정 이전 재학생, 수료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나. 제38조(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10조(등록의 종류)5호를 적용한다.
3.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가. 이 개정 세칙 제39조(논문 초록발표) 1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논문초록발표 결과 심사 통과 후 논문제목이 변경되지 않은 학생은 논문 초록 심사통과 인정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논문제목이 변경된 학생은 논문 초록발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나. 이 개정 세칙 제11조(입학등록)3항, 제17조(수업방법)2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개정 세칙 제36조의 2(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개정 2020.3.1.>

구분	내용	비율
1. 국제 저명 전문학술지	SCI, A&HCI, S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로 전공분야별 인용빈도 순위상위 50%이내에 해당하는 학술지와 그에 준하는 학술지	300%
2. 국제 전문 학술지	SCI, A&HCI, S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중 1항의 기준밖에 해당하는 학술지와 국제적 학술단체에서 발행한 학술지	200%
3. 국내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등재후보 포함)된 학술지 또는 연구소 및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논문지	100%

구분	내용	비율
저작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국제 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서적	100%